

서울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20나2004513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20나20045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합4225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준수, 박세원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앤대교, 담당변호사 이원희, 조석만

변론 종결2020. 4. 22.

판결 선고2020. 5. 8.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합422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6,0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는 것을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음을 분양대행사 상담직원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원고에게 알린 이상, 그에 덧붙여 이러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편법이 따로 있음을 설명하여 주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설명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원고가 그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전부가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더라도, 최소한 그 중 이 사건 계약 2건 중 어느 한 쪽은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액수가 적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계약금 상당액 151,793,7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르는 손해배상으로서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전체 입증으로도 이 사건 계약 2건 중 어느 한쪽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김갑석

판사김재령